第188回國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日 時 1998年2月11日(水)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朴相千・李廷武議員外 126人 發議)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李信範・鄭義和議員外 99人 發議)
3.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실시에관한法律案

審査된案件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朴相千・李廷武議員外 126人 發議) 1面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李信範・鄭義和議員外 99人 發議) 1面
3.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실시에관한法律案(李佑宰・李信範議員外 40人 發議) 1面

(11시35분 개의)

○**委員長 李相得**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與野 領袖會談 회의결과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國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許潛陣**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相得** 오늘 회의는 國會法 제52조에 의거 金浩一 議員外 8人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개회된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人事聽聞會에 관해서 國會法中改正法律案과 人事聽聞會法이 여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8인으로부터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우리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2월6일 10시, 2월7일 7시30분, 2월9일 오후 2시, 2월10일 오후 2시, 오늘 아침 10시20분 다섯차례에 걸쳐서 간사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법안이 제안이 되어 오면 상정하고 토론하고 또 여야 절충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幹事會議를 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8인이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소집요구가 왔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朴相千・李廷武議員外 126人 發議)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李信範・鄭義和議員外 99人 發議)
3.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실시에관한法律案**(李佑宰・李信範議員外 40人 發議)

(11시39분)

○**委員長 李相得** 의사일정 제1항 朴相千 議員外 127인이 발의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李信範 議員外 100인이 발의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실시에관한法律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提案說明하실 의원이 안 나오셨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李信範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李信範議員 존경하는 李相得 委員長님, 委員님 여러분!

國會法中改正法律案과 公務員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憲法의 규정에 의하여 國會의 同意 및 選出 등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 및 선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들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당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국민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헌법상 그 임명을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大法院長, 憲法裁判所의 長, 國務總理, 監査院長 및 大法官과 선출을 요하는 憲法裁判所 裁判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에 대한 임명동의 및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人事聽聞特別委員會를 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은 같은 취지로 과거 역대 정부가 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고위공무원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당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국민의 통제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國務委員, 中央行政機關인 處의 處長, 公正去來委員會 委員長, 院·部·處의 次官·次長, 廳의 長, 行政調整室長 및 國家安全企劃部의 部長 등의 임명에 있어 대통령이 미리 당해 공무원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國會議長은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의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人事聽聞特別委員會에 회부하여 의결을 거친 후에 이를 本會議에 附議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大統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자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두 가지 法에 대해서 심사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得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件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世東 1998년1월26일 李信範 議員·鄭義和 議員·宋勳錫 議員 외 98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參 照)

1. 제안이유

과거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및 선출 등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 및 선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들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당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국민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헌법상 그 임명을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선출을 요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 대한 임명동의 및 선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6조의3)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

이 改正法律案의 주요내용은 헌법상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 및 선출 등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위해 國會에 人事聽聞特別委員會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째, 案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을 요하는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을 위한 사전심사절차로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국회가 행사하는 동의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들 대상중 國會選出職(헌법재판관 3명, 중앙선관위원 3명)에 대한 인사청문의 경우는 국회가 스스로 선출후보자를 내세운 후 다시 人事聽聞會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선출절차가 다소 이중적이지 않느냐의 견해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案 동조제1항 및 부칙에 의하면 인사청문회의 주체로 人事聽聞特別委員會를 설치하여 人事聽聞會를 전담토록 하되 다만,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주체를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은 청문회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지나 현행 국회운영의 기본골격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청문회의 주체를 해당분야 업무에 대해서 관련이 깊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거나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案 동조제2항에 의하면 人事聽聞特別委員會의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섭단체별 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案 동조제3항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所管業務量과 專門性 등을 고려하여 상설 또는 비상설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案 제65조의2제1항에 의하면 人事聽聞會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기간 등에 대한 명시규정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案 동조제2항에 의하면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사자·증인 등의 직계존비속의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公職者倫理法에 의하여 공개가 거부된 재산 등에 대해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없는 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개된 경우의 학력이나 경력까지 비공개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公職者倫理法에 의하여 비공개로 등록한 재산을 공개할 경우 부작용은 없는지 여부, 법이 보호하고 있는 비공개사항을 최소 출석위원수의 기준없이 단순히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만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人事聽聞會制度는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회의 권력통제기능 강화, 공직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 정책소신 확인, 임명권자의 신중한 인선, 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의 인신공격 등 인권침해 가능성, 국회에서의 동의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 우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동 제도의 도입여부, 도입시기나 방법, 우리의 정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판단할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佑宰議員, 李信範議員外 40인이 1998년 1월26일에 발의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실시에관한法律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생략하고 檢討意見

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參 照)

1. 제안이유

과거 역대정부가 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고위공무원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당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국민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무위원 중앙행정기관인 처의 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원·부·처의 차관·차장, 청의 장, 행정조정실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등의 임명에 있어 대통령이 미리 당해 공무원의 적격성여부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회의장은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의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그 의결을 거친 후에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主要骨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 국가안전기획부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의 적격성에 관해 미리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는 人事聽聞特別委員會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그 의견을 회신토록 하려는 것이며 李信範議員外 100인이 1998년1월26일 발의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정법률안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案 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서 국회가 공무원이 될 자의 적격성을 심사할 대상으로 국무위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처장 및 차관을 대상으로 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에서 이들 임명대상자에 대해 심사한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들 공무원에 대한 國會 人事聽聞會制度가 대통령의 任命權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들 공무원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의견제시는 羈束力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안 제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憲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사실상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바 이들 두가지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案 제4조에서 임명대상자의 적격성심사를 人事聽聞特別委員會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임명대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해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案 제4조 및 제5조의 人事聽聞特別委員會 회부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조항은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규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國會法에 규정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憲法上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에 의해 임명되는 공직자가 아닌 이들 장·차관급의 공무원에 대한 國會 人事聽聞制度의 도입은 임명권자가 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적격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청문회 실시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得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大體討論 순서가 되겠습니다.

○金浩一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得 말씀하세요.

○金浩一委員 人事聽聞會制度를 도입하기 위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는 1996년11월1일자로 朴相千·李廷武議員外 112인의 의원이 이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했고 또 1998년1월26일자로 李信

範·鄭義和·宋勳錫·金文洙·李美卿·黃圭宣·許大梵·權哲賢·金浩一·金贊鎭·權琪述·李在五議員外 89인이 발의해서 제안이 되어져 있어서 현 의원 절대다수가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 별로 없다고 보고 또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이것의 타당성을 우리가 경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실시에 관한法律案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제안을 했고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大體討論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이것의 당연성이 인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견해로는 대체토론을 생략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구합니다.

○金文洙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得 예, 말씀하세요.

○金文洙委員 오늘 저희가 제안자 설명과 아울러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쳤습니다마는 사실 이 人事聽聞會에 관한 國會法改正案은 96년11월1일에 국민회의, 自民聯 전원 의원들의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배부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朴相千·李廷武議員 등 112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朴相千·李廷武議員을 비롯한 제안의원을 대표하는 국민회의, 自民聯 위원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회의, 自民聯이 이 人事聽聞會를 해야 된다고 가장 주창하던 당이고 또한 우리 국회가 사실상 충분히 자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조롱과 비판 또는 여러 가지 모멸감을 많이 받으면서 通法府라는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전횡과 독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가 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한 민주적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96년11월1일 朴相千·李廷武議員을 비롯한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 全員 112인이 함께 제안한 國會法改正案과 저희들이 이번에 함께 제안한 國會法中改正案과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實施에관한法律案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면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人事聽聞會의 對象數字와 또 인사청문회를 하는 方法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國會法改正案 중에서 모든 國會 同意를 필요로 하는 관직이 아닌 公務員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법을 분리하느냐 하는 이 점을 제외하고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違憲의 소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안이 조금 더 보완되었다, 그런 위헌소지를 피했다는 것 외에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으신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행정부의 次官級까지도 聽聞會對象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반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제안한 안과 또 이번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안한 안이 같습니다. 특별히 한나라당,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안이 범위를 넓힌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동안에 幹事會議를 다섯 차례 이상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의회의 자율과 독립, 행정부에 대한 진정한 견제를 위해서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것이 濫用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데 美國의 人事聽聞會 事例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대통령은 대사, 각료, 영사, 대법원판사 및 법에 의해 규정된 기타 관리를 임명함에 있어 上院의 勸告와 同意를 얻어야 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 인준대상 공직자는 행정부의 장관, 차관, 각종 독립규제위원회위원, 대사 등의 외교사절, 연방대법원 대법관 등 200만개의 관직 중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상원의 인준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9년 부시 대통령 취임 첫해에 상원에서 4만8,000건 이상의 인준 건을 접수했는데 자세한 조사대상이 된 고위직은 600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789년부터 1989년까지 200년 동안 미국의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부된 경우는 12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의 경우에는 200년 동안 거부된 경우가 28회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 지명자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남용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국회 자체의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고 또 소위원회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이 인사청문회의 운영 과정

자체가 보다 더 원래의 입법부의 독립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국정의 발전을 위한 원숙한 3權分立과 또 협조의 과정에 비추어서 잘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만약 문제점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 당에서 제출한 안 중에서 혹시 아까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의 主體委員會가 어디냐 그 부분은 사실상 완전히 聽聞會 特別委員會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은 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人權侵害 可能性이나 公開範圍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實務的인 點檢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人事聽聞會法의 제정이야말로 韓國議會史에 있어서 참으로 획기적인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먼저 저희들이 제안한 것 보다 먼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권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 법안의 제정과정에 不參한 국민회의, 自民聯 여러 委員들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동참하셔서 與野가 滿場一致로 함께 협의하고 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得 우리 金浩一 幹事께서 大體討論은 이번 小委員會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動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金在千委員 물론 우리 金浩一 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人事聽聞會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위원들과 함께 여기서 우리는 즉시 해야 된다 또 자기들은 지금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두고 논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국민회의, 자민련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왜 우리가 人事聽聞會를 도입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지금 국민회의와 자민련 위원들이 말씀하고 있는 말들이 과연 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언론을 상대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人事聽聞會 導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文民政府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高位公務員 任命過程에서 그 동안 많은 잡음과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고위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人事聽聞會 制度가 즉각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人事聽聞會 制度는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立法府가 行政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사청문회 제도는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정치적 가치관을 확립시켜 公職社會와 政治圈의 腐敗構造를 척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차기정부의 최초 조각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言論檢證을 통해 人事聽聞會의 效果를 대신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간조직인 언론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국민대표기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代表機關은 오직 國會인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人事聽聞會만이 고위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리 한나라당이 제출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 및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실시에관한法律案' 등 2개 법안이 원안대로 이번 회기내에 꼭 처리되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첫번째 組閣에 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예외조항으로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조각이 갖는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유독 첫 조각에 대해 人事聽聞會를 배제하려는 것은 다분히 총리로 유력시되는 特定人을 의식한 爲人設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金文洙 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인이 짓는 집은 준공검사를 해야 하고

자신이 짓는 집은 준공검사가 필요없다고 하는 그런 논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96년11월1일에 行政權의 濫用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국정감시비판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출해 놓은 이 人事聽聞會法案을 拒否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特定人을 의식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共同政權이라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집권기간 5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爲人設法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취임한 미국 클린턴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취임 이전에 내각 지명을 완료하고 상원의 각 위원회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 장관 피지명자에 대한 人事聽聞會를 이미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둘째, 人事聽聞會 制度의 즉각적인 도입은 바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대통령선거공약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그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요하지 않더라도 중립성을 요하는 고위공직의 경우도 憲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의 선출을 요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는 국회법의 개정으로도 인사청문회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고위공직자 이외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이 제출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과 함께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실시에관한法律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이번 金大中當選者가 정권 인수하는 즉시 國會의 行政府 統制權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得 수고하셨습니다.

○李在五委員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運營委員會에 불참한 少數黨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만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人事聽聞會에 관련된 國會法中改正法律案을 양당이 제출한 법안을 동시에 상정해서 다루자고 하는 運營委員會 한 당사자들이 不參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人事聽聞會가 이번 회기안에 적어도 政府組織에 관한 改編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 人事聽聞會法이 저는 먼저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우리가 들 필요도 없이 특히 우리나라 政治現實은 인사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소수당이 그 동안에 야당으로 있을 때 金泳三 政府를 혹평할 때 흔히 쓰는 말이 '人事가 萬事가 아니라 亡事' 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金泳三大統領이 '人事를 잘못해서 나라를 망쳤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金泳三 政府도 金泳三大統領이 취임 당시에 적어도 자기가 임명하는 國務委員은 자기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金泳三 政府의 국무위원의 평균수명이 67일입니다. 조금 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통계를 인용해 보면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평균수명이 두달 남짓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 현주소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金泳三 政府의 失政을 말하기에 앞서 그러한 실정이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실정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人事聽聞會를 통해서 오히려 金大中 當選者가 과거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法的, 制度的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金當選者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黨利黨略에 치우칠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새로 태어나는 정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國會法대로 이 법안이 조속히 검토되고 상정되어서 이번 14일 本會議에 이 人事聽聞會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는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것이 저는 이 인사청문회 도입 제도의 정신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 간사께서는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다시 소위원회에 넘기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소수당 간사들과 협의를 한 결과 다시 소수당 간사회의에서 협의를 하면 합의해서 이것

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인지 또 시간을 갖고 몇 차례 더 간사들과 합의를 해보아도 저 사람들이 黨利黨略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라든지 하는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해야 이것이 生産的인 國會運營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이 법안이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소수당이 분명하게 이 법안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는 우리 당으로서도 人事聽聞會法은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다. 도하 일간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적어도 인사청문회 도입의 찬성이, 그리고 이번 첫번 조각부터 人事聽聞會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여론이 국민의 70%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존경하는 金在千, 金文洙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어떤 이유로도 심의가 보류되거나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는 아주 절박한 그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得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 聽聞會制度改善小委員會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14일에 열립니다. 이틀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소위원회 분들이, 소위원장이 국민회의, 자민련분들을 독촉을 하시고 해서 조속히 소위원회에서 빨리 다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權琪述委員 權琪述 委員입니다.

지금 대체토론도 대개 끝났고 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金浩一 首席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96년11월1일 朴相千·李廷武·李海瓚·許南薰 議員 등 128인이 발의한 國會法中改正法律案 그리고 금년 1월26일 李信範·鄭義和·宋勳錫·金文洙 議員 등 10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와 관련되는 國會法中改正法律案 그리고 98년1월26일에 李佑宰·金浩一·金贊鎭·李在五 議員 등 42인이 발의한 公務員의任命에따른人事聽聞會의실시에관한法律案 등을 이제 청문회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소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되 오늘 유감스럽게도 국민회의 하고 자민련에서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때는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합니다.

○金贊鎭委員 金贊鎭 委員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대체로 小委議決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13일 10시에 이 운영위원회에 다시 모여서 의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小委의 심의시간을 제한하는 조건부로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得 소위원회에서 조건을 단다 해서 拘束力은 없으니까 조속히 결론을,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미 우리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聽聞會制度改善小委員會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건의 法律案을 우리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聽聞會制度改善小委員會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에 대하여 진지한 심의를 하신 후에 全體會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16분 산회)

○出席委員

李相得	權琪述	權哲賢	金文洙
金在千	金贊鎭	金忠一	金浩一
白承弘	宋勳錫	李相賢	李在五
林仁培	林鎭出		

○委員아닌出席議員

李信範　鄭義和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韓世東
立法審議官	安秉玉

【報告事項】

○委員會의開會要求

2月6日 金浩一議員外 8人으로부터 國會法 第52

條에 의거 國會運營委員會 開會要求가 있었음

○議案回附

1998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2월9일 政府提出)

2월9일자 回附됨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補任委員	辭任委員	交涉團體
國會運營	李信範	林鎭出	한나라당
	崔旭澈	金贊鎭	〃
	鄭義和	崔旭澈	〃

(2월10일자)

委員會	補任委員	辭任委員	交涉團體
國會運營	林鎭出	鄭義和	한나라당
	金贊鎭	李信範	〃

(2월11일자)